

법령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재난안전실

총 3건 건의

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도로열선 전력기본요금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	도로관리과
2	겨울철 신속한 보도제설을 위한 제도개선	도로관리과
3	옥내소화전 시인성 개선 및 규격 일원화	도로시설과

1. 도로열선 전력기본요금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1. 친환경 도로열선 사용 대비 전력기본요금 과다 부과 규제 완화 (법무담당관, '25. 5. 2.)</p> <p>※ 소관부서: 도로관리과</p> <p>※ 산업통상자원부 회신의견 ('25. 5. 20.)</p> <p>○ 특정 분야에 대한 감면 확대는 다른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 가중으로 연결될 수 있어 수용 불가</p>	<p>□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로열선은 급경사지, 상습결빙 지역, 응달진 지역, 제설작업 원거리 지역 등에 설치되어 폭설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자연재난 예방시설로서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음 <p>□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로열선은 초기 설치비(1.0~1.3억원/100m)가 많이 발생됨에도 폭설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○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이 전력량요금(사용요금)에 비해 과다하여 자치구의 도로열선 확대와 겨울철 사용에 어려움 있음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한국전력공사) 기본공급약관 제67조(요금의 계산)에 도로결빙 전기설비에 대해 50% 감액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추진 <p>□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1조(목적) ○ 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(전기의 공급약관) ○ 「한전 기본공급약관」 제67조(요금의 계산) 	<p>(산업통상자원부) (행정안전부) (한국전력공사)</p>

2. 겨울철 신속한 보도제설을 위한 제도개선 (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)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2. 겨울철 신속한 보도제설을 위한 제도개선 (도로관리과, '24.12.18.) (도로관리과, '25.5.27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인력식 제설방식에서 기계화·자동화 제설방식으로 꾸준히 변화 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">  ⇒ 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인력식 제설 > < 소형 제설카트 활용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잦은 국지적 폭설시 인력식 제설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, 소형 제설카트는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운 보도·하천·공원 등에서 제설작업이 용이하여 도입 필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도로교통법」상 소형 제설카트는 ‘차’에 해당하여 보도 제설작업시 소형 제설카트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※ 강북구청 서울지방경찰청 질의회신('24.4.8.) - 보도용 제설차량 보도 운행 불가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형 제설카트가 보도상 운행 가능하도록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‘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·장치’에 포함 되도록 시행규칙 개정 필요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제2조(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·장치)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대설 등 풍수해 예방대바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사용되는 기구·장치(신설)</p> </div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	<p>(경찰청) (행정안전부)</p>

3. 옥내소화전 시인성 개선 및 규격 일원화 건의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3. 옥내소화전 시인성 개선 및 규격 일원화 (도로시설과, '25. 4. 25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 및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재 시 초기대응에 중요한 옥내소화전의 시인성 개선 필요 - 정전, 화재연기 등으로 터널 내부가 어둡거나 혼란스런 상황 속에서 터널이나 지하차도에 설치된 소화전함을 시민이 사용하지 못하여 화재 피해가 확대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화전함 테두리에 색상과 모양을 표준화한 조명 설치규정 신설 - 소화전함 외곽둘레에 주백색의 발광조명 설치로 소화전함의 시인성 강화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.2.3 (3) 	<p>(국토교통부)</p>

제331회 시의회 정례회
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2025.6.16.(월) 10:30

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관한 건의사항 보고

2025. 6. 16.(월)

재 난 안 전 실

법령 제·개정 건의사항 보고

-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,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·개정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제·개정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,
 - 첫 번째는 겨울철 상습결빙 지역이나 급경사지 등에 도로열선 설치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, 도로 열선 사용에 부과되는 전력요금의 50% 감액을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신설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였으나, 특정분야에 대한 요금 감면이 다른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수용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.

 - 두 번째는 소형 제설카트가 도로교통법상 ‘차마’에 해당하여 보도 제설작업에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, 소형 제설카트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‘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’에 포함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였고, 현재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.

- 세 번째는 터널이나 지하차도 내에서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시민들이 소화전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옥내소화전의 시인성을 개선하고 규격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‘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’ 개정을 건의하였고,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개정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

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

2025년도 상반기 국가기관 법령 제·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